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854호 2011. 11 1(화)

◀ 고 시 ▶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도로 지정 고시(제2011-87호) 2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제2011-90호) 6
- 도로명주소 고시(제2011-91호)..... 7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제2011-91호) 13

◀ 공 고 ▶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2011-978호) 15
- 포항시 대중교통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2011-999호) 28
-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제2011-1008호) 32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40

회 람									
--------	--	--	--	--	--	--	--	--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1 - 87호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도로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60km/h 이하의 도로를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0월 26일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도로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고시

가. 포항시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60km/h 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나. 관내자동차 운행도로 중 60km/h를 초과하는 도로는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다. 단, 저속전기자동차 제한도로와 허용도로의 교차로 통과는 허용한다.

- 3. 운행(제한)구역 지정 도면 및 자료 : 붙임2참조(포항시청 교통행정과 비치)
-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도로 지정고시 관계도서(서류)는 포항시청 교통행정과(054-270-3644)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 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도로 현황
 2.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도로 도면

붙임 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도로 현황

구역	연번	운행 제한 구간
포항시	1	국도 대체우회도로 (홍해(신항만) ~ 연일 ~ 오천 ~ 동해)
	2	우현동 (문화원사거리 ~ 7번국도(홍해방면))
	3	홍해읍 (대련삼거리 ~ 포항IC구간)
	4	대이동 (이동삼거리 ~ 포항IC구간)
	5	효곡동 (효문주유소 ~ 경주방면)
	6	대송면 (송동사거리 ~ 포항 , 건천산업도로)
	7	청림동 (해병1사단(북문) ~ 구룡포방면)

※ 포항시 관내 자동차 운행 도로 중 60km/h의 이하 도로 허용.

붙임 2)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도로 도면





포항시 고시 제2011-9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3번지 외 5필지(지방하천 : 냉천)내에 하수관로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 항 시 장(인)

2011. 10. 27

□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자	비고
	읍면동	지번		일시	영구	일시	영구		
냉 천 (지방하천)	인덕동	103번지 외 5필지	하수관로 매설	346	69	2011. 10. 27 ~ 2011. 12. 26	허가일로부터 영구	(주)아마트포항점 정용진 외 1인	

포항시 고시 제2011 -91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10. 31.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행복길 90 외 1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동 780-1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행복길 90	20091201	행복파트 단지를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37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84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36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82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영포리 30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65	20091201	호랑이 꼬리안 호미곶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포리 286-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빛이로 160-16	20091201	해빛이광장 앞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칠림동 710-8, 710-5, 900-12, 송장동 1-74, 1-78, 1-84, 1-91, 1-108, 109-2, 390, 397, 1-72, 1-58, 1-1, 397-1, 송내동 1-306, 1-373, 1-367, 1-365, 동촌동 5-14, 5-16, 5-18, 5-23, 375-20, 5-11, 375-40, 5-5, 5-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20090710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9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57번길 6	20091201	장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459-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삼안로46번길 40	20091201	삼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20-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22번길 25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226-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청산강남로418번길 74-20	20091201	청산강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18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3048번길 9-4	20091201	호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4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7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242-20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2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87-1	20091201	항구구역(읍내리)을 이용하여 읍내길로 명명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진로340번길 30	20091201	남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09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142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66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3-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64	20091201	원동 구획정리지역으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황사리 263-3, 2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154번길 297-1	20091201	오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4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265-1	20091201	포항시와 상상을 위해 해병대 1사단의 포항주둔 50주년을 기념으로 해병로로 명명된 도로명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0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흥계길 6-57	20091201	흥계구역명(흥계리)을 이용하여 흥계길로 명명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390-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 1753	20091201	기림시를 지나 오천 용산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문화재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1-2, 석리 77-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09	20091201	지명(조항산)을 이용하여 조항산길로 명명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20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길71번길 101	20091201	도구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3-7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70-27	20091201	해정구역명(구룡포읍)을 이용하여 구룡포길로 명명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3-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70-25	20091201	해정구역명(구룡포읍)을 이용하여 구룡포길로 명명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81-3, 58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로130번길 177	20091201	동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77	20091201	송덕과 문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조합하여 송덕로 명명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 357-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길4번길 42	20091201	죽단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319-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 296	20091201	옛 지명(원서)을 이용하여 원서길로 명명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84번길 41-14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84번길 41-13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84번길 41-10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8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107번길 64-1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8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107번길 64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89-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칠강로107번길 62	20091201	칠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1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 18	20091201	용주마을의 옛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60-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77-2	20091201	상공회의소를 지나는 도로로 상공업의 발전을 영원하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4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175번길 17-6	20091201	대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 626-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칠강로 360	20091201	세계적인 활강 도시 포항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31-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395-17	20091201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77-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01번길 15-5	20091201	구룡포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지명리 17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지명로146번길 42-14	20091201	지명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254-25	20091201	운제산을 향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32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34-22	20091201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469-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34-20	20091201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4-1,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436-25	20091201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68-3, 해도동 51-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91번길 19-13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지동 57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성로15번길 9	20091201	호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북리 261, 26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남성길1번길 94-21	20091201	남성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월동 190-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부추길 9-12	20091201	지역의 특산물인 부추단지의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1, 해도동 43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150번길 58	20091201	양학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지동 신27, 지곡동 7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77	20091201	포스텍 대학 캠퍼스지의 호를 이용한 도로명	
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동 20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인덕로 34	20091201	행정구역명(인덕동)을 이용하여 인덕로 명명	
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135-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97	20091201	상공회의소를 지나는 도로로 상공업의 발전을 영원하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49-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175번길 17	20091201	대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75-1, 대장동 33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106	20091201	양학천을 따라 연결된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7-8, 5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191-5	20091201	서기지 중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0-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세마일로 11-10	20090730	세마일운동 발상지의 성지가 있는 기계면 운성리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0-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세마일로 11-8	20090730	세마일운동 발상지의 성지가 있는 기계면 운성리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35-1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성로 14-2	20091201	칠성진 마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3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 21-27	20091201	용연저수지를 향하는 길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51-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81번길 5	20091201	흥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2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세마로로 3868-16	20090730	세마를운동 발상지의 성지가 있는 기계면 문성리 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1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비학로 1943	20090730	학이 날아가는 형상인 포항의 명산 비학산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6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67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길 132	20091201	행정구역명(고현리)을 이용하여 고현길로 명명	
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성동 152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랑로17번길 6-8	20091201	정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50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길 213	20091201	행정구역명(일광리)을 이용하여 일광길로 명명	
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리 8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진길 17	20091201	행정구역명(용진리)을 이용하여 용진길로 명명	
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5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흥로502번길 78	20091201	상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11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길 60-7	20091201	행정구역명(인비리)을 이용하여 인비길로 명명	
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전마로46번길 30	20091201	전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전마로46번길 28	20091201	전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99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1133번길 78-91	20111017	비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용기리 34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용기길 35-26	20091201	행정구역명(용기리)을 이용하여 용기길로 명명	
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아리 2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아길129번길 5	20091201	학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리 476-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길 75	20091201	행정구역명(화대리)을 이용하여 화대길로 명명	
7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39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방공원길139번길 19-11	20091201	사방공원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3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방공원길139번길 19-10	20091201	사방공원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9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랑로189번길 5-13	20091201	정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랑로189번길 5-10	20091201	정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랑로189번길 5-6	20091201	정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33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랑중앙로 27	20110630	정랑주택지구의 중앙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도로명	
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곡리 10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북로353번길 5-4	20091201	기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17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739	20090730	죽장면소재지에서 영덕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특안동 20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로 109	20091201	행정구역명(양학동)을 이용하여 양학로로 명명	
8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성동 149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랑로17번길 65	20091201	정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동동 393, 여남동 39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여남포길21번길 18	20091201	여남포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9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63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성리 22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흥로 727	20091201	3대 호수가 있었던 지역의 상흥초와 흥해를 연결하는 도로로 옛지명(흥정)과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9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전마로 81	20091201	양덕사거리에서 전마산면을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4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랑로 164	20091201	행정구역명(정랑동)을 이용하여 정랑로로 명명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안덕동 17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안덕로 30	20091201	행정구역명(안덕동)을 이용하여 안덕로로 명명	
9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안덕동 179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안덕로 12	20091201	행정구역명(안덕동)을 이용하여 안덕로로 명명	
9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안덕동 18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안덕남로 119	20091201	행정구역 명칭(안덕동)과 방위(남)를 이용하여 안덕남로로 명명	
9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4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로 17	20091201	행정구역명(장성동)을 이용하여 장성로로 명명	
9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50-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71번길 27-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암동 289-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49-19	20091201	한동해 물류중심도시 포항이 동해로 항차게 바뀌어가는 새천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9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곡리 3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상곡길 76-3	20091201	행정구역명(상곡리)을 이용하여 상곡길로 명명	
9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안덕동 15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6번길 16-27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안덕동 1358	1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 104-7	20091201	안덕사거리에서 천마산로를 지나 영일만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4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범원로40번길 60-1	20091201	범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22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비학로1969번길 55	20091201	비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6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신리 588-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534번길 30-15	20091201	신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런리 187-3, 18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진로85번길 22	20091201	달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복순리 388-2, 3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716번길 54	20091201	신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936-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침포로 158	20091201	침포해수욕장을 향하는 도로로서 행정구역 명(침포리)을 이용한 도로명	
1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25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463번길 20	20091201	동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6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안덕동 15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72번길 26	20091201	천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2-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광로31번길 5-6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흥동 430, 우현동 356-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영흥로291번길 19	20091201	영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전리 36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34-34	20111018	옛 지명(신덕)을 이용하여 신덕로로 명명	
1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3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 220-14	20110930	포항의 최고봉 면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39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 220-13	20110930	포항의 최고봉 면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38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 220-10	20110930	포항의 최고봉 면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38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 220-6	20110930	포항의 최고봉 면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39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 220-5	20110930	포항의 최고봉 면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38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 220-4	20110930	포항의 최고봉 면봉산을 향하는 도로의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83-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흥성길 99-26	20111031	청하의 안산인 흥성 남쪽자락을 따라 흥성길로 옛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1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83-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흥성길 99-24	20111031	청하의 안산인 흥성 남쪽자락을 따라 흥성길로 옛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고시 제2011 - 9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10. 31.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상공로 177-2 외 25건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등의 신축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별지]

No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77-2	2011-10-31	건축물 말소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01번길 15-5	2011-10-31	건축물 말소	
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191-7	2011-10-31	건축물 말소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191-5	2011-10-31	건축물 말소	
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산길 103-3	2011-10-31	건축물 말소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70-25	2011-10-31	건축물 말소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22번길 25-1	2011-10-31	건축물 말소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22번길 25	2011-10-31	건축물 말소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3048번길 9-4	2011-10-31	건축물 말소	
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길 60-7	2011-10-31	건축물 말소	
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로 109	2011-10-31	건축물 말소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진읍 냉천로284번길 41-14	2011-10-31	건축물 말소	
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85번길 22	2011-10-31	건축물 말소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146번길 42-14	2011-10-31	건축물 말소	
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25-1	2011-10-31	건축물 말소	
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25	2011-10-31	건축물 말소	
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89번길 5-8	2011-10-31	건축물 말소	
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방공원길139번길 19-10	2011-10-31	건축물 말소	
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길 76-3	2011-10-31	건축물 말소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233번길 4-2	2011-10-31	건축물 말소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233번길 4-1	2011-10-31	건축물 말소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233번길 4	2011-10-31	건축물 말소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237	2011-10-31	건축물 말소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233번길 2	2011-10-31	건축물 말소	
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비화로 1943	2011-10-31	건축물 말소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107번길 62	2011-10-31	건축물 말소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1-978호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장 박승호

2011. 9. .

1. 개정이유

공무원 보수 체계 간소화에 따라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으로써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정근수당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계지원비와 교통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정근수당 지급 조정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함) (별표 3의 2)
- 현실물가에 맞는 훈련비 조정(별표 4)
-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별표 4)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4. 규칙안 : 붙임2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를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 규정에 의한” 을 “제5조에 따른” 으로 하고, “6인” 을 “6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와 제6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각호의 1과”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년도” 를 “해당연도” 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직급보조비, 업무추진교통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며” 를 “직급 보조비를 지급하며” 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1월” 을 “1개월” 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2월이상” 을 “2개월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 이내” 를 “6개월 이내” 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당해년도” 를 “해당연도” 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1월이상 3월이하” 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로, “18월” 을 “18개월”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월이상 3월이하” 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로 같은 조 제4항 중 “6월” 을 “6개월” 로 한다.

별표1,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종목별 및 단원의 정원

종 목	계	총감독	유 도	육 상	조 정
총 계	38	1	16	11	10
총 감독	1	1			
감독	3		1	1	1
트레이너	1			1	
코 치	3		1	1	1
선 수	30		14	8	8

【별표 3의2】

□ 정근수당 지급 구분

호 봉	지 급 액	비 고
1 호봉	월본봉금액 40퍼센트	
2 호봉	“ 50퍼센트	
3 호봉	“ 60퍼센트	
4 호봉	“ 70퍼센트	
5호봉 이상	“ 80퍼센트	

※ 가계지원비, 교통비 본봉 포함

【별표 4】

□ 훈련비

○ 전 지

(1인 1일/원)

계	숙박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일비
69,000	30,000	21,000	5,000	3,000	10,000

○ 합숙 및 비합숙

(1인1일/원)

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29,000	21,000	5,000	3,000

【별표 5】

□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	은	동	비 고
올림픽대회	20,000	10,000	7,000	
세계선수권대회	10,000	7,000	5,000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국제마라톤대회	3,000	2,000	1,000	5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000	1,000	700	10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
전국체전	1,000	700	500	10개국 미만 참가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500	300	200	

- ※ 단원이 동일 대회에서 2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 지도자는 해당종목 선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씩 지급한다.
- ※ 마라톤(단축마라톤 포함)의 경우
1·2위=금, 3·4위=은, 5·6위=동으로 적용한다.
- ※ 대회신기록 수립시 100퍼센트 추가 지급하며, 한국 신기록 수립 시 2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 ※ 국제대회 10개국 이상 참가인 경우,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 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육상은 5개국)
- ※ 국제대회 10개국 참가 미만인 경우, 전국체육대회 입상 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한다.(육상은 5개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 ----- -----</p>
<p>제2조(종목 및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종목 및 정원)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p>
<p>제4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 3. (생략)</p> <p>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④ ~ ⑤ (생략)</p> <p>⑥ (생략)</p> <p>1. ~ 3. (생략)</p> <p>4. 기타 중요한 사항</p>	<p>제4조(인사위원회) ① ----- 제5조에 따른----- ----- ----- 6명-----</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p>
<p>제5조(인사기록)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제5조(인사기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p>

현 행	개 정
<p>제8조(보수의 지급기준 및 단원의 등급 조정) ① (생 략)</p> <p>② 단원(선수)등급은 특급, A, B, 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 4. (생 략)</p> <p>③ (생 략)</p> <p>④ 단원(선수)등급 조정은 매년말에 실시하며, 등급평가기준은 당해년도 입상성적으로 한다. (단, 재직중인 선수가 부상등으로 당해년도 입상성적이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제8조(보수의 지급기준 및 단원의 등급 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해 당연도----- -----해당연도 ----- -----</p>
<p>제9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p> <p>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p> <p>2. ~ 5.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9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p> <p>1. ----- 그 밖에 -----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복리후생비 등) 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명절휴가비, <u>직급보조비</u>, <u>업무추진교통비</u> 및 <u>가계지원비</u>를 지급하며, 그 지급일은 매월 봉급기준일로 하고,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명절 휴가비 지급일로 한다.</p>	<p>제14조(복리후생비 등) ----- ----- -----<u>직급보조비</u>를 지급하 며,----- ----- ----- -----</p>

현 행	개 정
<p>제20조(훈련) 총감독(감독코치)은 년간 훈련계획을 수립 연도개시 1월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훈련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제20조(훈련) ----- -----1개월 ----- -----</p>
<p>제21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제21조(전지훈련) ----- --각 호의 어느 하나-----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25조(피복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p>	<p>제25조(피복비) ----- ----- ----- -----그 밖의----- ----- -----</p>
<p>제28조(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p> <p>1. ~ 3. (생 략) ② ~ ④ (생 략)</p>	<p>제28조(직권면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p> <p>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9조(휴직) ① 단원이 2월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p>	<p>제29조(휴직) ① -----2개월 이상 ----- -----</p>

현 행	개 정
<p>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u>6월이내</u>로 한다.</p> <p>③ (생 략)</p>	<p>-----</p> <p>② -----</p> <p>--6개월 이내-----</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채용연령) (생 략)</p> <p>1. ~ 2. (생 략)</p> <p>3. 선수의 연령 :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u>당해년도</u> 전국대회 이상의 입상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p>	<p>제30조(채용연령)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u>해당년도</u>-----</p> <p>-----</p> <p>---</p>
<p>제34조(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34조(징계) ① -----</p> <p>-<u>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생 략)</p> <p>② 정직은 <u>1월이상 3월이하</u>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u>18월간</u> 승급할 수 없다</p> <p>③ 감봉은 <u>1월이상 3월이하</u>의 기</p>	<p>제3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1개월 이상 3개월 이하</u>-----</p> <p>-----</p> <p>-----</p> <p>-----</p> <p>-----</p> <p><u>18개월</u>-----</p> <p>③ -----<u>1개월 이상 3개월 이하</u>-----</p>

현 행	개 정																																																																																																																		
<p>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 할 수 없다 ④ 견책은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⑤ (생 략)</p> <p>【별표1】 □ 종목별 및 단원의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 목</th> <th>계</th> <th>총감독</th> <th>유 도</th> <th>육 상</th> <th>조 정</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38</td> <td>1</td> <td>16</td> <td>11</td> <td>10</td> </tr> <tr> <td>총감독</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감독</td> <td>3</td> <td></td> <td>1</td> <td>1</td> <td>1</td> </tr> <tr> <td>코 치</td> <td>4</td> <td></td> <td>1</td> <td>2</td> <td>1</td> </tr> <tr> <td>선 수</td> <td>30</td> <td></td> <td>14</td> <td>8</td> <td>8</td> </tr> </tbody> </table> <p>【별표3의 2】 □ 정근수당 지급 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호 봉</th> <th>지 급 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호봉</td> <td>일본봉금액 60%</td> <td></td> </tr> <tr> <td>2호봉</td> <td>일본봉금액 70%</td> <td></td> </tr> <tr> <td>3호봉</td> <td>일본봉금액 80%</td> <td></td> </tr> <tr> <td>4호봉</td> <td>일본봉금액 90%</td> <td></td> </tr> <tr> <td>5호봉 이상</td> <td>일본봉금액 100%</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계	총감독	유 도	육 상	조 정	총 계	38	1	16	11	10	총감독	1	1				감독	3		1	1	1	코 치	4		1	2	1	선 수	30		14	8	8	호 봉	지 급 액	비 고	1호봉	일본봉금액 60%		2호봉	일본봉금액 70%		3호봉	일본봉금액 80%		4호봉	일본봉금액 90%		5호봉 이상	일본봉금액 100%		<p style="text-align: center;">----- -----</p> <p>④ -----6개월----- ⑤ (현행과 같음)</p> <p>【별표1】 □ 종목별 및 단원의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 목</th> <th>계</th> <th>총감독</th> <th>유 도</th> <th>육 상</th> <th>조 정</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38</td> <td>1</td> <td>16</td> <td>11</td> <td>10</td> </tr> <tr> <td>총감독</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감독</td> <td>3</td> <td></td> <td>1</td> <td>1</td> <td>1</td> </tr> <tr style="background-color: yellow;"> <td>트레이너</td> <td>1</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코 치</td> <td>3</td> <td></td> <td>1</td> <td>1</td> <td>1</td> </tr> <tr> <td>선 수</td> <td>30</td> <td></td> <td>14</td> <td>8</td> <td>8</td> </tr> </tbody> </table> <p>【별표3의 2】 □ 정근수당 지급 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호 봉</th> <th>지 급 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호봉</td> <td>일본봉금액 40퍼센트</td> <td></td> </tr> <tr> <td>2호봉</td> <td>일본봉금액 50퍼센트</td> <td></td> </tr> <tr> <td>3호봉</td> <td>일본봉금액 60퍼센트</td> <td></td> </tr> <tr> <td>4호봉</td> <td>일본봉금액 70퍼센트</td> <td></td> </tr> <tr> <td>5호봉 이상</td> <td>일본봉금액 80퍼센트</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 가계지원비, 교통비 본봉 포함</p>	종 목	계	총감독	유 도	육 상	조 정	총 계	38	1	16	11	10	총감독	1	1				감독	3		1	1	1	트레이너	1			1		코 치	3		1	1	1	선 수	30		14	8	8	호 봉	지 급 액	비 고	1호봉	일본봉금액 40퍼센트		2호봉	일본봉금액 50퍼센트		3호봉	일본봉금액 60퍼센트		4호봉	일본봉금액 70퍼센트		5호봉 이상	일본봉금액 80퍼센트	
종 목	계	총감독	유 도	육 상	조 정																																																																																																														
총 계	38	1	16	11	10																																																																																																														
총감독	1	1																																																																																																																	
감독	3		1	1	1																																																																																																														
코 치	4		1	2	1																																																																																																														
선 수	30		14	8	8																																																																																																														
호 봉	지 급 액	비 고																																																																																																																	
1호봉	일본봉금액 60%																																																																																																																		
2호봉	일본봉금액 70%																																																																																																																		
3호봉	일본봉금액 80%																																																																																																																		
4호봉	일본봉금액 90%																																																																																																																		
5호봉 이상	일본봉금액 100%																																																																																																																		
종 목	계	총감독	유 도	육 상	조 정																																																																																																														
총 계	38	1	16	11	10																																																																																																														
총감독	1	1																																																																																																																	
감독	3		1	1	1																																																																																																														
트레이너	1			1																																																																																																															
코 치	3		1	1	1																																																																																																														
선 수	30		14	8	8																																																																																																														
호 봉	지 급 액	비 고																																																																																																																	
1호봉	일본봉금액 40퍼센트																																																																																																																		
2호봉	일본봉금액 50퍼센트																																																																																																																		
3호봉	일본봉금액 60퍼센트																																																																																																																		
4호봉	일본봉금액 70퍼센트																																																																																																																		
5호봉 이상	일본봉금액 80퍼센트																																																																																																																		

현 행	개 정																																																																																																																	
<p>【별표4】 <input type="checkbox"/> 훈련비 (단위:천원) ○ 전 지 (1인 1일/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숙박비</th> <th>식 비</th> <th>목욕비</th> <th>간식비</th> <th>교통비</th> </tr> <tr> <td>53,500</td> <td>22,000</td> <td>15,000</td> <td>3,500</td> <td>3,000</td> <td>10,000</td> </tr> </table> <p>○ 합 속 (1인 1일/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식 비</th> <th>목욕비</th> <th>간식비</th> </tr> <tr> <td>21,500</td> <td>15,000</td> <td>3,500</td> <td>3,000</td> </tr> </table> <p>○ 비합속 (1인 1일/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식 비</th> <th>목욕비</th> <th>간식비</th> </tr> <tr> <td>21,500</td> <td>5,000</td> <td>3,500</td> <td>3,000</td> </tr> </table> <p>【별표5】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금</th> <th>은</th> <th>동</th> <th>비 고</th> </tr> <tr> <td>올림픽대회</td> <td>20,000</td> <td>10,000</td> <td>7,000</td> <td></td> </tr> <tr> <td>세계선수권대회</td> <td>10,000</td> <td>7,000</td> <td>5,000</td> <td>아시아게임 유나바사이드</td> </tr> <tr> <td>아시아선수권대회</td> <td>2,000</td> <td>1,000</td> <td>700</td> <td>기타 국제대회</td> </tr> <tr> <td>전국체전</td> <td>1,000</td> <td>700</td> <td>500</td> <td></td> </tr> <tr> <td>전국규모대회</td> <td>500</td> <td>300</td> <td>200</td> <td></td> </tr> </table> <p>※ 대회신기록 수립시 200퍼센트</p>	계	숙박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교통비	53,500	22,000	15,000	3,500	3,000	10,000	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21,500	15,000	3,500	3,000	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21,500	5,000	3,500	3,000	구 분	금	은	동	비 고	올림픽대회	20,000	10,000	7,000		세계선수권대회	10,000	7,000	5,000	아시아게임 유나바사이드	아시아선수권대회	2,000	1,000	700	기타 국제대회	전국체전	1,000	700	500		전국규모대회	500	300	200		<p>【별표4】 <input type="checkbox"/> 훈련비 (단위:천원) ○ 전 지 (1인 1일/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숙박비</th> <th>식 비</th> <th>목욕비</th> <th>간식비</th> <th>일 비</th> </tr> <tr> <td>69,000</td> <td>30,000</td> <td>21,000</td> <td>5,000</td> <td>3,000</td> <td>10,000</td> </tr> </table> <p>○ 합속 및 비합속 (1인 1일/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계</th> <th>식 비</th> <th>목욕비</th> <th>간식비</th> </tr> <tr> <td>29,000</td> <td>21,000</td> <td>5,000</td> <td>3,000</td> </tr> </table> <p><삭 제></p> <p>【별표5】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금</th> <th>은</th> <th>동</th> <th>비 고</th> </tr> <tr> <td>올림픽대회</td> <td>20,000</td> <td>10,000</td> <td>7,000</td> <td></td> </tr> <tr> <td>세계선수권대회</td> <td>10,000</td> <td>7,000</td> <td>5,000</td> <td>아시아게임 유나바사이드</td> </tr> <tr> <td>국제마라톤대회</td> <td>3,000</td> <td>2,000</td> <td>1,000</td> <td>5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td> </tr> <tr> <td>아시아선수권대회</td> <td>2,000</td> <td>1,000</td> <td>700</td> <td>10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td> </tr> <tr> <td>전국체전</td> <td>1,000</td> <td>700</td> <td>500</td> <td>10개국 미만 참가 국제대회</td> </tr> <tr> <td>전국규모대회</td> <td>500</td> <td>300</td> <td>200</td> <td></td> </tr> </table> <p>※ ----- 100퍼센트 추</p>	계	숙박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일 비	69,000	30,000	21,000	5,000	3,000	10,000	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29,000	21,000	5,000	3,000	구 분	금	은	동	비 고	올림픽대회	20,000	10,000	7,000		세계선수권대회	10,000	7,000	5,000	아시아게임 유나바사이드	국제마라톤대회	3,000	2,000	1,000	5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000	1,000	700	10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	전국체전	1,000	700	500	10개국 미만 참가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500	300	200	
계	숙박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교통비																																																																																																													
53,500	22,000	15,000	3,500	3,000	10,000																																																																																																													
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21,500	15,000	3,500	3,000																																																																																																															
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21,500	5,000	3,500	3,000																																																																																																															
구 분	금	은	동	비 고																																																																																																														
올림픽대회	20,000	10,000	7,000																																																																																																															
세계선수권대회	10,000	7,000	5,000	아시아게임 유나바사이드																																																																																																														
아시아선수권대회	2,000	1,000	700	기타 국제대회																																																																																																														
전국체전	1,000	700	500																																																																																																															
전국규모대회	500	300	200																																																																																																															
계	숙박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일 비																																																																																																													
69,000	30,000	21,000	5,000	3,000	10,000																																																																																																													
계	식 비	목욕비	간식비																																																																																																															
29,000	21,000	5,000	3,000																																																																																																															
구 분	금	은	동	비 고																																																																																																														
올림픽대회	20,000	10,000	7,000																																																																																																															
세계선수권대회	10,000	7,000	5,000	아시아게임 유나바사이드																																																																																																														
국제마라톤대회	3,000	2,000	1,000	5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000	1,000	700	10개국 이상 참가 국제대회																																																																																																														
전국체전	1,000	700	500	10개국 미만 참가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500	300	200																																																																																																															

현 행	개 정
<p>가산 지급하며, 한국 신기록 수립 시 2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p> <p>〈신 설〉</p>	<p>가 -----, ----- -----</p> <p>※ 국제대회 10개국 이상 참가 경우, <u>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 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한다.</u> (육상은 5개국)</p> <p>※ 국제대회 10개국 참가 미만인 경우, <u>전국체육대회 입상 보상금에 준하여 지급한다.</u> (육상은 5개국)</p>

포항시 공고 제2011-999호

포항시 대중교통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장 박승호

2011. . . .

1. 제정이유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효율성 및 시민참여확보 및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부패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위원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9조)
- 라. 회의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시내버스 재정과 관련된 의결에 이해관계자의 배제(안 제8조)

3. 관련법령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부패영향분석과-2617(2010.08.17)]
 - ▶ 버스재정지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 운송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포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포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대중교통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중교통행정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 및 심의 안전 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전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해관계자의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대중교통 사업자, 운수종사자, 교통관련 시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시내버스 요금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내버스 재정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의 이해관계자가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동의로 이해관계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

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위원이 사망 또는 금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 6. 제11조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제4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담당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포항시 공고 제2011-1008호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10월 28일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나.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다. 학교급식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라.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사. 지원대상자 및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 우편번호 790-722, 전화 054-270-3062, FAX 054-270-302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포항시 지역 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함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3.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함
4.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

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기준에 부합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기타
- 나. 경상북도지사 및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지역 농특산물
-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함

제3조(임무) ① 시장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3. 안전성확보를 위한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 개선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따른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경비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 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대상 학교 및 유치원·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무상급식과 급식경비의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읍·동지역의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④ 시장은 급식경비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등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지역 포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보육시설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 및 무상급식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
- ③ 지원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고, 부당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급자의 선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 급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

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지원내역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부시장 및 업무담당 국장
2. 포항시의회 의원
3. 포항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담당 부서의 장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7.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농민(생산자) 단체 대표
9.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대상학교와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영양 및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유치원·보육시설의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생산단지 조성 및 종합 교육시설
4.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지역 내 법인, 농업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교육감)은 필요시 지원 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교육장(교육감)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지도·감독 하고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정 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1년 10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10. 31.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8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 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백견	갈평	병포	약성	확야 (수자원공사)
			안개암수		임하담수	형산강 복류수 안개암수		진전지	눌타지수	곡감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미생물	1.일련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변성대장균군(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인간상유해염양무기물	4.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불소(F)	1.5mg/l이하	0.19	불검출	불검출	0.21	0.22	불검출	불검출	0.17	불검출
	6.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1.2	1.1	1.4	1.2	1.3	0.2	0.8	1.9	1.2
	13.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보론(B)	1.0mg/l이하	0.05	0.02	0.03	0.06	0.06	0.01	0.03	0.04	0.01
인간상유해염양무기물	15.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에틸벤젠(Ethyl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1,4-다이옥신(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유독물질	32.유리 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41	0.49	0.72	0.42	0.51	0.38	0.61	0.47	0.93
	33.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49	0.049	0.069	0.052	0.040	0.035	0.044	0.038	0.064
	34.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22	0.037	0.054	0.021	0.016	0.034	0.016	0.024	0.055
	35.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9	0.010	0.013	0.020	0.014	0.010	0.018	0.010	0.009
	36.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8	0.002	0.002	0.011	0.010	불검출	0.010	0.004	불검출

구 분	검 사 항 목	경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신변기밀 업무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감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01	45	56	114	114	35	68	107	47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2.1	4.1	4.4	2.0	1.6	1.8	1.6	2.3	4.7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7.2	6.8	6.6	7.3	7.2	6.9	6.8	6.8	7.4	
	45.아연(Zn)	3mg/ℓ이하	0.005	0.003	불검출	0.002	0.004	0.007	0.007	0.163	0.003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29	11	13	34	33	13	27	16	12	
	47.총발견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79	61	132	182	191	62	127	183	103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6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5	0.07	0.14	0.07	0.06	0.05	0.08	0.08	0.08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45	13	16	52	53	16	32	61	11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4	불검출	불검출	0.04	0.04	불검출	불검출	0.02	불검출	
판		경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경수장 급수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변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26	0.22	0.30	0.24	0.31	0.24	0.20	0.25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18	0.007	불검출	0.026	0.031	0.010	0.007	0.157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32	11	13	32	33	13	27	16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12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10	불검출	불검출	0.006	불검출	불검출		
판		경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빨리콜 270-8282**,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